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2. . . (제 회)	

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
제출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연근해 어선 부원의 선원명부 공인, 선원 구직·구인 등록기관 확대, 교육훈련기간의 승무경력 포함 등의 내용으로 선원 권익을 향상토록 하는 한편, 선원당직국제협약(STCW)을 국내 수용하여 극지운항 선박 승선 선원의 법정 교육훈련 근거를 마련함.

2. 주요내용

가. 연근해어선 부원 공인(안 제6조 제1호 내지 제2호 삭제)

연근해어선 부원도 공인을 받도록 개정하여 해양사고 시 승선원 확인, 승무경력 증명을 위한 전산화 및 재해보상을 위한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나. 구직·구인등록기관 확대(안 제37조 개정)

구직·구인등록기관에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을 포함하여 선원의 구직활동 접근성을 제고함

다. 극지운항선박교육 근거 마련(안 제43조 제1항 개정)

선원당직국제협약(STCW)을 국내수용하여 극지운항 선박에 승선하는 선원들의 법정 교육훈련 근거를 마련함

라. 선원의 교육훈련 기간도 승무경력에 포함(안 제43조 제3항 신설)

선원의 교육훈련은 선박 및 인명의 안전을 위한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것으로 승무경력에 포함하도록 함

마. 여권 등 신분증 대리보관 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별표2 개정)

법 제50조의2항(여권 등 대리보관 금지) 신설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

대통령령 제 호

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선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의사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대우를 받는 해원으로
서 해양수산부령에서 정하는 사람

제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을 각각 “**정한 임금
은**”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일·주·월외**”를 “**일·주·월 외**”로, “**정
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제2호 내지 제4호**”를 “**정한 임금은 제2호부터 제4
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도급제에 의하여 정하여진 임금에 대
하여는**”을 “**도급제로 정한 임금은**”으로, “**도급제에 의하여 계산된**”을 “**도급
제로 계산된**”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제1호 내
지 제6호에서 정한 2이상**”을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정한 둘 이상**”으
로, “**제1호 내지 제6호의 방법에 의하여**”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방법
으로**”로 한다.

제3조의2제2항 본문 중 “**범위내**”를 “**범위**”로, “**선박소유자간**”을 “**선박소유
자 간**”으로,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항해중인
항해당직자의**”를 “**항해 중인 항해당직자의**”로, “**항해중인 항해당직자의**”를
“**항해 중인 항해당직자 외**”로 한다.

제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간중”을 “기간 중”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일용선원에 대하여는”을 “일용선원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3조의4제1항 본문 중 “1인당 1월”을 “1명당 1개월”로, “105이상”을 “105 이상”으로, “95이하”를 “95 이하”로,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2회이후”를 “제2회 이후”로, “직전회”를 “직전회차”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폐지된”을 “폐업한”으로, “하여 제1항”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변동비용에 의한다”를 “변동비용로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산정함에 있어서”를 “산정할 때”로 한다.

제3조의5 중 “첫출어부터 조업종료”를 “출어부터 조업 종료”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9조에 따른”으로, “자가”를 “사람이”로, “운임·식비·의료비 기타”를 “운임·식비·의료비 및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9조에 따라”로, “자는”을 “사람은”으로, “상환하여야”를 “상환해야”로 한다.

제5조제2항제2호 중 “유기 구제비용”을 “유기(遺棄) 구제비용”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인정하여 고시하는”을 “고시하는”으로 한다.

제5조의2제3항 중 “지급하여야”를 각각 “지급해야”로 한다.

제5조의3제2항 중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한다.

제6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영위하는”을 “경영하는”으로, “·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조제7호”를 “· 「선박직원법」 제2조제4의3호”로 하고, 같은 항

중 “신청하여야”를 각각 “신청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한다.

제9조 중 “첨부하여야”를 “첨부해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자를”을 “각 호의 사람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본문 중 “아니하고”를 “않고”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자와”를 “사람과”로, “해양수산부령이”를 “해양수산부령에서”로, “자를”을 “사람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해양수산부령이”를 “해양수산부령에서”로,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11조 본문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지체없”을 “지체 없”으로, “반환하여야”를 “반환해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을 “법 제45조제2항”으로,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신청하여야”를 “신청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첨부하여야”를 “첨부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자가”를 “사람이”로, “다른 그”를 “다른”으로, “기재사항”을 “기록사항”으로, “반납하여야”를 “반납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제1호 중 “앞면 :”을 “앞면:”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뒷면 :”을 “뒷면:”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16조 중 “기재하여야”를 “기록해야”로,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를 “기록해서는 안 된다”로 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17조의4제5호 중 “존부(存否)”를 “존재 여부”로 한다.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청이 있는 때”를 “신청을 받은 경

우”로, “**미지급한**”을 “**지급하지 않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가목 중 “**진행중**”을 “**진행 중**”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및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1월**”을 각각 “**1개월**”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환가**”를 “**환가(換價)**”로, “**3월 이상이 소요될**”을 “**3개월 이상이 필요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성하여야**”를 “**조성해야**”로 한다.

제18조의4제1항 중 “**청구하여야**”를 “**청구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지급하여야**”를 “**지급해야**”로 한다.

제18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19조제4항 본문 중 “**첫출어부터 조업종료**”를 “**출어부터 조업 종료**”로, “**1월미만인 때에는 1월단위**”를 “**1개월 미만인 때에는 1개월 단위**”로, “**6월 이상인 때에는 6월단위**”를 “**6개월 이상인 때에는 6개월 단위**”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6월이상**”을 “**6개월 이상**”으로 한다.

제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임금중**”을 “**임금 중**”으로, “**135퍼센트로 한다.**”를 “**135퍼센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140퍼센트로 한다**”를 “**140퍼센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2호외**”를 “**제2호 외**”로, “**145퍼센트로 한다.**”를 “**145퍼센트**”로 한다.

제19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임금중**”을 “**임금 중**”으로, “**165퍼센트로 한다.**”를 “**165퍼센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1호외**”를 “**제1호 외**”로, “**170퍼센트로 한다.**”를 “**170퍼센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2호외**”를

“**제2호 외**”로, “**175퍼센트로 한다.**”를 “**175퍼센트**”로 한다.

제20조제4호 중 “**시킨**”을 “**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내역별**”을 “**명세별**”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공제한**”을 “**빚**”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본문 중 “**500톤이상**”을 “**500톤 이상**”으로, “**750킬로와트이상**”을 “**750킬로와트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통등에 넣지 아니한**”을 “**통 등에 넣지 않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비치하여야**”를 “**갹추어야**”로 한다.

제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선박소유자**”를 “**소유자**”로, “**아니할**”을 “**않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3척이하**”를 “**3척 이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선박소유자가 해양수산부장관**”을 “**소유자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예비원에 대하여**”를 “**예비원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하선한 자**”를 “**하선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정직중인 선원에 대하여는**”을 “**정직 중인 선원은**”으로,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한다.

제22조의2제3호 중 “**어선**”을 “**승선원이 10명 미만인 어선**”으로 한다.

제23조 중 “**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를 “**정할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에서**”로 한다.

제24조 중 “**범위에 관하여**”를 “**범위**”로 한다.

제29조제1호 중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를 “**사망 당시 그가 부양하고**”로, “**자를**”을 “**사람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지 아니한**”을 “**사망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지 않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를 “사망 당시 그가 부양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를 “사망 당시 그가 부양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지 아니한”을 “사망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지 않은”으로 한다.

4. 선원의 사망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지 않은 형제자매

제30조제1항 중 “각호의 순서에 의하고”를 “각 호의 순서에 따르고”로, “호에 규정된 자”를 “호에서 규정한 사람”으로, “기재된”을 “기록된”으로, “의하되”를 “따르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적용함에 있어서”를 “적용할 때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자가 2인 이상”을 “사람이 2명 이상”으로, “수에 의하여”를 “수로”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유족보상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보상을 받을 권리를 상실하고 같은 순위의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순위의 사람, 같은 순위의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순위의 사람이 이를 승계한다.

제31조 중 “순위에 관하여”를 “순위”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산정하여야”를 “산정해야”로 한다.

제37조 중 “지방해양항만관청”을 “지방해양항만관청 및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른 한국해양수산연수원”으로 한다.

제38조제1항제5호 중 “기재”를 “기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112조제6항”을 “법 제112조제7항”으로, “동항제1호”를 “같은 항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지도·감독하여야”를 “지도·감독해야”로 한다.

제39조제1항 중 “제115조제1항”을 “법 제115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급”을 “수요·공급”으로, “협의하여야”를 “협의해야”로 한다.

제43조제1항 중 “기초안전교육·상급안전교육·여객선교육·당직부원교육·유능부원교육·전자기관부원교육·탱커기초교육·탱커보수교육·가스연료추진선박교육·의료관리자교육·고속선교육·선박조리사교육”을 “기초안전교육·상급안전교육·여객선교육·당직부원교육·유능부원교육·전자기관부원교육·탱커기초교육·탱커보수교육·가스연료추진선박교육·극지운항선박교육·의료관리자교육·고속선교육·선박조리사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교육대상자·교육내용 및 교육기간”을 “교육대상자·교육내용, 교육기간 및”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과 동등이상의 수준”을 “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과 같은 수준 이상”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③ 선원이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완료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별 교육기간을 법 제51조에 따른 승무경력에 포함해야 한다.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체결하여야”를 “체결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고시하여야”를 “고시해야”로 한다.

제44조의2제2항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면”을 “필요한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이하 “피교육자”라 한다)는”을 “사람(이하 “피교육자”라 한다)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경우 :”를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아니한 경우 :”를 “않은 경우:”로 한다.

제4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7조(정부보조의 범위) 정부는 법 제118조제1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49조 중 “**의하여 발하는**”을 “**따른**”으로, “**기타 자료를 제출하여야**”를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49조의3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통보하여야**”를 각각 “**통보해야**”로 한다.

제49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국**”을 ““**기국(旗國)**”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나목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기국(旗國)**”을 “**기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작성·관리하여야**”를 “**작성·관리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인정되는 경우**”를 “**판단되는 경우**”으로, “**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를 “**해제를 결정해야**”로 한다.

제49조의6제2항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50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산**”을 “**기산(起算)**”으로 한다.

제50조의6제1항 중 “**당해연도**”를 “**해당연도**”로, “**30일 전**”을 “**30일 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하여**”를 “**따른**”으로, “**변경하고자 하는**”을 “**변경하려는**”으로, “**기제한**”을 “**기록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사업별 소요예산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를 “**사업별로 필요한 예산을 구분하여 기록해야**”로 한다.

제50조의7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선박소유자**”를 각각 “**소유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게시하여야**”를 “**게시해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아니하는 선박의 선박소유자**”를 “**않는 선박의 소유자**”로, “**아니함**”을 “**않음**”로 한다.

제51조 중 “**해군함정·경찰용선박 기타**”를 “**해군함정·경찰용선박 및 그 밖에**”로 한다.

제52조제3항 중 “**법 제108조제1호**”를 “**법 제108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5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행하여야**”를 “**이행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선박안**”을 “**선박 안**”으로, “**숙지하도록**”을 “**자세히 알도록**”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선박안**”을 “**선박 안**”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국내외의 규정등**”을 “**국내·외의 규정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소요되는 충분한**”을 “**충분한**”으로 한다.

제54조제1항 전단 중 “**아니하는 외국선박에 승무하고자 하는 자가**”를 “**않는 외국선박에 승무하려는 사람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에**”를 “**사람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아니한 자**”를 “**않는 사람**”으로 한다.

제56조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선원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2. 99. 99.>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3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의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7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선원의 근로 및 생활 등에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가. 법 제12조 본문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9조 제2항제1호	100	150	200
나. 법 제14조 본문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9조 제2항제1호	100	150	200
다.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비상대비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9조 제1항제1호	250	375	500
라.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여객에게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주지시키지 않은 경우	법 제179조 제1항제2호	250	375	500
마. 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비상대비훈련을 실시할 때 해원의 휴식시간에 지장을 준 경우	법 제179조 제1항제3호	250	375	500
바. 법 제18조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9조 제2항제1호	60	120	200
사.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법 제179조 제2항제3호	60	120	200
아. 법 제21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9조 제2항제4호	100	150	200
자.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9조 제2항제5호	60	120	200
차. 법 제42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179조 제2항 제5호의2	100만원 한도에서 통지하지 않은 선박 1척당 1만원	150만원 한도에서 통지하지 않은 선박 1척당 2만원	200만원 한도에서 통지하지 않은 선박 1척당 4만원
카. 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선원의 승선·하선 교대가 있을 때마다 선원명부에 그 사실과 승선 선원의 성명을 적지	법 제179조 제2항제6호	60	120	200

않은 경우				
타. 법 제44조제3항을 위반하여 선원명부의 공인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79조 제2항제6호	60	120	200
파. 법 제50조의2항을 위반하여 선원의 여권 등 신분증을 대리하여 보관한 경우	법 제179조 제1항제6의3호	100	150	200
하. (현행 과목과 같음)				
거. (현행 하목과 같음)				
너. (현행 거목과 같음)				
< 이하 생략 >				
노. (현행 고목과 같음)				
도. (현행 노목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기타 직원의 범위)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2. (생략) 3. 의사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자와 동등이상의 대우를 받는 해원으로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자	제3조(기타 직원의 범위) ----- ----- ----- ----- 1. 2. (현행과 같음) 3. 의사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대우를 받는 해원으로서 해양수산부령에서 정하는 사람
제3조의2(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 방법) ①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통상임금을 시간급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시간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 2. 일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 3. 주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주의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 4. 월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월의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	제3조의2(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 방법) ① ----- ----- ----- -- 따른다. 1. ----- 정한 임금은 ----- 2. ----- 정한 임금은 ----- 3. ----- 정한 임금은 ----- 4. ----- 정한 임금은 -----

5. 일·주·월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제2호 내지 제4호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6. 도급제에 의하여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임금산정기간에 있어서 도급제에 의하여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당해 임금산정기간(임금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마감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총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

7. 임금이 제1호 내지 제6호에서 정한 2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제1호 내지 제6호의 방법에 의하여 각각 산정된 금액의 합산액

②제1항에서 “1일의 소정근로시간” 또는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란 법 제60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내에서 단체협약 또는 선원과 선박소유자간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며, “월의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월의 소정근로일수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시간을 말한다. 다만, 임금체계가 근로시간에 관계없

5. 일·주·월 외-----
-- 정한 임금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

6. 도급제로 정한 임금은 -----
----- 도급제로 계산된 ----- 해당 -----

7. ----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정한 둘 이상-----
-----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방법으로 -----

② -----
----- 범위-----
----- 선박소유자 간-----
-----이란 -----

이 책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u>항해중인 항해당직자의</u> 소정근로시간은 <u>항해중인 항해당직자의</u> 의 선원의 소정근로시간과 같아야 한다.	----- <u>항해 중인 항해당직자의</u> ----- ---- <u>항해 중인 항해당직자 외</u> ----- ----- -----.
제3조의3(승선평균임금의 산정방법) ①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승선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일수와 그 <u>기간</u> 중에 지급된 임금은 <u>당해</u> 기간 및 임금의 총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제3조의3(승선평균임금의 산정방법) ① ----- ----- ----- ----- <u>기간</u> ----- <u>중</u> ----- <u>해당</u>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②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또는 수당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것에 <u>한하여</u> 임금의 총액에 산입한다.	② ----- ----- ----- ----- <u>한정하여</u> ----- -----.
③일용선원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업종별로 정하는 금액을 승선평균임금으로 한다.	③ <u>일용선원은</u> ----- -----.
④법 제2조제12호, 이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승선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u>의한다</u> .	④ ----- ----- ----- ----- <u>따른다</u> .
제3조의4(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	제3조의4(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

금의 조정) ①법 제96조부터 제10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병보상등을 지급할 선원에 대하여 적용할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은 그 선원이 소속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직무에 종사하는 선원에게 지급된 통상임금의 <u>1인당 1월</u> 평균액(이하 “평균액”이라 한다)이 그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에 동일한 직무에 종사하는 선원에게 지급된 통상임금 평균액의 100분의 <u>105이상</u> 이 되거나, 100분의 <u>95이하</u> 로 된 경우에는 그 변동비율에 <u>의하여</u> 인상 또는 인하된 금액으로 하되, 그 변동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 이를 적용한다. 다만, <u>제2회 이후</u> 의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의 증감을 위한 조정은 <u>직전 회</u> 의 변동사유가 발생한 달의 통상임금을 산정기준으로 한다.	금의 조정) ① ----- ----- ----- ----- ----- ----- ----- <u>1</u> ----- <u>명당 1개월</u> ----- ----- ----- ----- ----- <u>105 이상</u> ----- --- <u>95 이하</u> ----- ----- <u>따라</u> ----- ----- ----- ----- <u>제2회 이후</u> ----- ----- <u>직전 회차</u> ----- -----.
②제1항의 경우 그 선원이 소속한 사업장이 <u>폐지된</u> 경우에는 그 선원의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당시의 같은 규모의 업종·사업장 및 선박을 기준으로 <u>하여 제1항</u> 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 ----- <u>폐업한</u> ----- ----- ----- ----- ----- <u>제1항</u> -----.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그
선원과 동일한 직무에 종사하는
선원이 없는 때에는 그와 유사
한 직무에 종사하는 선원에게
지급된 통상임금의 평균액의 변
동비율에 의한다.

④법 제94조제1항에 따른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 선원에 대한 법 제37조 및 제55조에 따른 실업수당 및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적용할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정된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으로 한다.

제3조의5(공동경비) 법 제2조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경비”란 첫출어부터 조업 종료까지 발생하는 직접 경비를 말한다.

제4조(재외국민송환비용의 부담 및 상환) 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송환에 쓰인 비용은 송환된 자가 부담하며, 그 비용은 송환에 쓰인 윤임·식비·의료비 기타 비용으로 한다.

②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환된 자는 선박소유자 또는

③ -----

----- 변

동비율로 한다.

④ —————

산정할 때

제3조의5(공동경비) -----

----- 출어부터 조업 종료 -----

제4조(재외국민송환비용의 부담
및 상환) ① 법 제19조에 따른

-- 사람이 -----
----- 운임 · 식비 · 의료비
및 그 밖의 -----.

② 법 제19조에 따라 -----
----- 사람은 -----

선장이 송환에 쓰인 비용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즉시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제5조(유기구제보험 등의 가입)

① (생략)

② 법 제4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 또는 공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생략)
2. 「보험업법」 제2조제6호 및 제8호에 따른 보험회사 및 외국보험회사가 법 제42조의2제2항에 따른 선원의 유기 구제비용(이하 “유기 구제비용”이라 한다) 보장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보험업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손해보험

3. 4. (생략)

5. 국제적인 공제 업무를 운영
하는 자의 공제로서 유기 구
제비용을 보충할 능력이 있다
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
여 고시하는 공제

제5조의2(유기 구제비용의 청구와 지급) ①·② (생략)

③ 법 제42조의2제3항에 따른

상환해야 ----.

제5조(유기구제보험 등의 가입)

① (현행과 같음)

② _____

1. (현행과 같음)

2. -----

----- 유기(遺棄)

구제비용-----

3. 4. (현행과 같음)

5. _____

_____ 고시하
는 _____

제5조의2(유기 구제비용의 청구와 지급)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서에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u>첨</u> <u>부하여야</u> 한다.	----- <u>첨</u> <u>부해야</u> ----.
제10조(선원보증서에 의한 선원수 첩의 갈음) ①법 제4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선원”이란 다음 <u>각호의</u> <u>자</u> 를 말한다.	제10조(선원보증서에 의한 선원수 첩의 갈음) ① ----- ----- <u>각 호의</u> <u>사</u> 를 <u>을</u> --.
1. 외국 영토에 기항하지 <u>아니</u> <u>하고</u> 어로작업에 종사하는 선 박에 승무하는 부원. 다만, 당 직부원의 직무에 종사하는 <u>자</u> <u>와</u> <u>해양수산부령</u> 이 정하는 <u>자</u> <u>를</u> 제외한다.	1. ----- <u>않고</u> - ----- ----- <u>사</u> <u>라</u> 과 <u>해양수산부령</u> 에서 ---- ----- <u>사</u> <u>라</u> 를 ----.
2. 국내항 사이만을 운항하는 여객선에 승무하는 부원으로 서 <u>해양수산부령</u> 이 정하는 <u>자</u>	2. ----- ----- -- <u>해양수산부령</u> 에서 -- <u>사</u> 라
3. 4. (생 략)	3. 4. (현행과 같음)
제11조(선원수첩의 반환) 다른 사 람의 선원수첩을 가지고 있는 <u>자</u> 는 본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 는 <u>지체없이</u> 이를 <u>반환하여야</u> 한다. 다만, 법 제45조제2항의 <u>규정</u> 에 따라 선장이 보관하는 경우에는 <u>그러하지 아니하다</u> .	제11조(선원수첩의 반환) ----- ----- <u>사람은</u> ----- -- <u>지체 없</u> ---- <u>반환해야</u> ---- ----. ---- 법 제45조제2항---- ----- ----- <u>그렇지 않다</u> .
제13조(선원신분증명서의 발급 등) ①법 제48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라 선원신분증명서를 발급	제13조(선원신분증명서의 발급 등) ① ----- -----

받으려는 경우에는 본인이 지방 해양항만관청(해양수산사무소 장의 경우에는 선원신분증명서 발급장비를 갖춘 해양수산사무 소의 장으로 한정한다)에 <u>신청</u> <u>하여야</u> 한다.	----- ----- ----- ----- ----- <u>신청</u> <u>해야</u> ----.
②미성년자가 선원신분증명서 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그 신 청서에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u>첨부하여야</u> 한다.	② ----- ----- ----- ----- ----- <u>첨부해야</u> ----.
③선원신분증명서를 소지한 <u>자</u> <u>가</u> 법 제48조제3항에 <u>따른 그</u>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발급신청 을 하거나 법 제49조에 따라 재 발급신청을 하는 경우 또는 <u>기</u> <u>재사항</u> 의 정정신청을 하는 경우 에는 소지하고 있는 선원신분증 명서를 <u>반납하여야</u> 한다.	③ ----- <u>사</u> 라 <u>이</u> ----- <u>따른</u> ---- ----- ----- ----- <u>기</u> <u>록사항</u> ----- ----- ---- <u>반납해야</u> -----.
④선원신분증명서 발급·정정 등에 <u>관하여</u> <u>필요한</u> 사항은 해 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④ ----- --- <u>필요한</u> ----- -----.
제15조(선원신분증명서의 규격 및 수록내용) ① (생 략)	제15조(선원신분증명서의 규격 및 수록내용) ① (현행과 같음)
②선원신분증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표기되어야 한다.	② ----- -----.
1. <u>앞면</u> : 증명서 번호, 성명, 성 별, 국적, 생년월일, 출생지, 주 민등록번호, 신체특징, 발급	1. <u>앞면</u> : ----- ----- -----

지, 발급일, 기간만료일, 사진, 서명	----- --
2. <u>뒷면</u> : 발급관청, 생체인식정보(지문), 기계관독자료	2. <u>뒷면</u> : ----- -----
③선원신분증명서의 재질 등에 <u>관하여 필요한</u>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 <u>필요한</u> ----- -----.
제16조(승무경력증명서의 발급)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은 법 제51조에 따라 승무경력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요구한 사항만을 <u>기재하여야</u> 하며, 본인에게 불리한 기호나 표시를 하거나 허위사실을 <u>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u> .	제16조(승무경력증명서의 발급) ----- ----- ----- ----- <u>기록해야</u> ----- ----- <u>기록</u> <u>해서는 안 된다</u> .
제17조(임금의 지급) ① 법 제52조제2항 단서에서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17조(임금의 지급) ① ----- ----- ----- -----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u>의하여</u> 산정되는 장려금·능력수당 또는 상여금	2. ----- <u>따라</u> ----- ----- -----
3. (생략)	3.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의4(지연이자의 적용 제외 사유) 법 제55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제17조의4(지연이자의 적용 제외 사유)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5.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u>존부(存否)</u> 를 법원이나 법 제4조에 따른 선원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 ----- -- <u>존재 여부</u> ----- ----- -----
6. (생략)	6. (현행과 같음)
제18조의2(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절차) ①지방해양항만관청은 선박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선박소유자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선원의 <u>신청이 있는 때에는</u> 해당 선박소유자가 <u>미지급한</u> 임금 및 퇴직금(이하 “체불임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이하 “도산등사실인정”이라 한다)할 수 있다.	제18조의2(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절차) ① ----- ----- ----- ----- ----- <u>신청을 받은 경우</u> ----- ----- <u>지급하지 않은</u> ----- ----- -----.
1.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업이 폐	1. ----- ----- -----

지과정에 있을 것	-----
가. 그 사업의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 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 되거나 채무변제를 위하여 양도된 경우(「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가 <u>진행</u>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가. ----- ----- ----- ----- ----- ----- <u>진행</u> 중-----
나. (생략)	나. (현행과 같음)
다. 그 사업의 영업활동이 1월 이상 중단된 경우	다. ----- 1 <u>개월</u> -----
2. 체불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체불임금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것	2. ----- ----- ----- ----- -----
가. 도산등사실인정일 현재 선박소유자가 1월 이상 소재불명인 경우	가. ----- ----- 1개월 ----- -----
나. 선박소유자의 재산을 환가하거나 회수하는데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부터 3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 <u>환가</u> (換價)----- ----- 3개월 이상이 필요한 -----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은 신청이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 ----- ----- ----- <u>해야</u>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 ----- ----- -----.
제18조의3(임금채권보장보험 등의 종류) ①법 제5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선박소유자(선박소유자단체를 포함한다)가 가입하거나 <u>조성하여야</u> 하는 보험·공제 또는 기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8조의3(임금채권보장보험 등의 종류) ① ----- ----- -- <u>조성해야</u> ----- -----.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8조의4(체불임금의 청구와 지급) ①법 제56조에 따라 체불임금을 지급받으려는 선원은 해당 선박소유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등이 있거나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날부터 2년 이내에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보험·공제 또는 기금을 운영하는 선주상호보험조합, 보험업자, 공제업자 또는 기금운영자(이하 “보험업자·공제업자 또는 기금운영자”라 한다)에게 체불임금을 <u>청구</u> 하여야 한다.	제18조의4(체불임금의 청구와 지급) ① ----- ----- ----- ----- ----- ----- ----- ----- ----- <u>청구</u> 해야 -----.
②보험업자·공제업자 또는 기금운영자가 제1항에 따라 체불임금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② ----- ----- -----

특별한 사유가 <u>없는 한</u> 체불임금을 청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체불임금을 <u>지급하여야</u> 한다.	----- <u>없으면</u> ----- ----- ----- <u>지급해야</u> -----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18조의5(체불임금 지급사유의 확인 등) ① 제18조의4에 따라 체불임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지방해양항만관청의 확인을 받아 함께 <u>제출하여야</u> 한다.	제18조의5(체불임금 지급사유의 확인 등) ① ----- ----- ----- ----- --- <u>제출해야</u>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어선원의 임금에 대한 특별) ① ~ ③ 삭제	제19조(어선원의 임금에 대한 특별) ④ ----- ----- --- <u>출어부터 조업 종료</u> ---- ----- -- <u>1개월 미만인 때에는 1개월 단위</u> ----- <u>6개월 이상인 때에는 6개월 단위</u> ----. --- ----- <u>6개월 이상</u> ----- ----- --.
④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어선원의 비율급 및 생산수당의 정산은 <u>첫출어부터 조업종료</u> 까지의 기간을 단위로 하되, 그 기간이 <u>1월미만인 때에는 1월단위로 정산하고, 그 기간이 6월이상인 때에는 6월단위로 정산한다.</u> 다만, 그 기간이 <u>6월이상인 경우에는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으로 정산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u>	
제19조의2(어선원의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의 산정기준) ①법	제19조의2(어선원의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의 산정기준) ① -

제57조제2항에 따른 어선원의 통상임금은 다음 <u>각호</u> 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 ----- <u>각 호</u> ----- 따라 -----.
1. 월고정급 및 생산수당으로 임금을 지급하되 <u>임금중</u> 월고정급의 비율이 큰 업종 또는 선박으로서 어선원과 어선소유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월고정급의 <u>135퍼센트</u> 로 한다.	1. ----- ----- <u>임금 중</u> ----- ----- ----- ---- <u>135퍼센트</u>
2. 월고정급 및 생산수당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제1호외의 경우에는 월고정급의 <u>140퍼센트</u> 로 한다.	2. ----- ----- ----- ----- ----- <u>140퍼센트</u> .
3. 제1호 및 <u>제2호외</u> 의 업종 또는 선박의 경우에는 월고정급의 <u>145퍼센트</u> 로 한다.	3. ----- <u>제2호 외</u> ----- ----- -- <u>145퍼센트</u>
②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어선원의 승선평균임금은 다음 <u>각호</u> 의 방법에 <u>의하여</u> 산정한다.	② ----- ----- <u>각 호</u> ----- ----- <u>따라</u> -----.
1. 월고정급 및 생산수당으로 임금을 지급하되 <u>임금중</u> 월고정급의 비율이 큰 업종 또는 선박으로서 어선원과 어선소유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월고정급의 <u>165퍼센트</u> 로 한다.	1. ----- ----- <u>임금 중</u> ----- ----- ----- ---- <u>165퍼센트</u>
2. 월고정급 및 생산수당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u>제1호외</u> 의 경우에는 월고정급의	2. ----- ----- <u>제1호 외</u> -----

<u>170퍼센트로 한다.</u>	<u>170퍼센트</u>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업종 또는 선박의 경우에는 월고정급의 <u>175퍼센트로 한다.</u>	3. ----- <u>제2호 외</u> ----- ----- -- <u>175퍼센트</u>
제20조(임금대장의 기재사항) 법 제5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0조(임금대장의 기재사항)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시간외근로 및 휴일근로를 <u>시킨</u> 경우에는 그 시간수	4. ----- <u>한</u> -----
5. 임금의 <u>내역별</u> 금액	5. ---- <u>명세별</u> ---
6. 법 제5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금액	6. ----- ----- <u>뿐</u> ----- -----
제21조(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의 승무선박) ①법 제6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총톤수 <u>500톤이상</u> 또는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조제10호에 따른 주 기관 추진력 <u>750킬로와트이상</u> 의 선박을 말한다. 다만, 평수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예선(曳船) 및 「해사안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면비행선박은 제외한	제21조(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의 승무선박) ① ----- ----- ----- <u>500톤 이상</u> ----- ----- ----- <u>750킬로와트 이상</u> ----- ----. ----- ----- ----- ----- -----

다.	--.
②법 제6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화물적재선박”이란 통등에 넣지 아니한 석유류 액체화학물질 또는 액화가스를 그대로 싣는데 전용되는 선박을 말한다. 다만, 평수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을 제외한다.	② ----- ----- ----- <u>통 등에 넣지 않은</u> ----- ----- -----.
③법 제6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선박안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선박시설 중 구명정·구명뗏목·구조정 또는 고속구조정을 <u>비치하여야</u> 하는 선박을 말한다.	③ ----- ----- ----- ----- <u>갖</u> ----- <u>추어야</u> -----.
④·⑤ (생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21조의2(예비원) ①법 제67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항해선이 아닌 선박의 <u>선박소유자</u> 가 예비원을 총승선 선원 수의 10퍼센트 이상 확보하지 <u>아니할</u>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제21조의2(예비원) ① ----- ----- ----- <u>소유자</u> ----- ----- ----- <u>않을</u> ----- -----.
1. 선박소유자가 보유하고 있는 선박이 <u>3척이하</u> 인 경우. 다만, 선박소유자가 보유하고 있는 선박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인 경우에	1. ----- ----- <u>3척 이하</u> -----.

6. 선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지 아니한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의 자녀 및 부모의 형제자매

6. ---- 사망 당시 그가 부양하
고 있지 않은 -----

④ 유족보상을 받을 수 있는 같은 순위의 자가 2인이상 있는 경우에는 유족보상은 그 지급받을 사람의 수에 의하여 등분하여 지급한다.

④ _____

_____ 사람이 2명 이상 _____

_____ 수로 _____

_____ .

⑤ 유족보상을 받을 수 있었던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보상을 받을 권리를 상실하고 같은 순위의 자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순위의 자가, 같은 순위의 자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순위의 자가 이를 승계한다.	⑤ 유족보상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보상을 받을 권리를 상실하고 같은 순위의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순위의 사람이, 같은 순위의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순위의 사람이 이를 승계한다.	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 4. (생략) 5. 법 제58조에 따른 임금대장의 비치와 임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의 기재 6. ~ 10. (생략)	----- ----- ----- 1. ~ 4. (현행과 같음) 5. ----- ----- 기록 6. ~ 10. (현행과 같음)
제31조(피부양자의 범위등) 법 제101조제1항에 따라 행방불명보상을 받을 수 있는 피부양자의 범위 및 순위에 관하여는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피부양자의 범위등) ----- ----- ----- 순위----- ----- --.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2조제6항에 따라 선원관리사업자가 선박소유자(외국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선원의 인력관리업무를 위탁받는 경우에 포함시켜야 되는 동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 법 제112조제7항----- ----- ----- ----- 같은 항제1호 ----- ----- -----.
제33조(재해보상의 지급) ① 법 제106조제4항에 따른 재해보상의 청구를 받은 제32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지체 없이 재해보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33조(재해보상의 지급) ① ----- ----- ----- ----- ----- 산정해야 -----. ② (현행과 같음)	③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2조제6항에 따라 정한 사항을 선원관리사업자가 성실하게 수행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③ ----- ----- ----- ----- 지도·감독해야 -----.
제37조(구직·구인등록기관) 법 제10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지방해양항만관청을 말한다.	제37조(구직·구인등록기관) ----- ----- 지방해양항만관청 및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른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제39조(선원인력수급관리제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15조제1항에 따른 선원인력 수급관리에 관한 제도를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선원인력 수급과 관련된 기관·단체에	제39조(선원인력수급관리제도) ① ----- 법 제115조제1항----- ----- ----- ----- ----- -----
제38조(선원관리사업) ① 법 제11	제38조(선원관리사업) ① -----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선원인력의 <u>수급과 관련하여</u> 법 제107조 제2항제2호다목에 따른 외국인 선원의 고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u>협의하여야</u> 한다.	② ----- -- <u>수요·공급</u> ----- ----- ----- ----- ----- <u>협의해야</u> ----- ---
제43조(선원의 교육훈련) ① 법 제116조제1항에 따른 선원의 교육훈련은 <u>기초안전교육·상급안전교육·여객선교육·당직부원교육·유능부원교육·전자기관부원교육·탱커기초교육·탱커보수교육·가스연료추진선박교육·의료관리자교육·고속선교육·선박조리사교육</u> 및 선박보안교육으로 구분한다.	제43조(선원의 교육훈련) ① ----- ----- <u>기초안전교육·상급안전교육·여객선교육·당직부원교육·유능부원교육·전자기관부원교육·탱커기초교육·탱커보수교육·가스연료추진선박교육·극지운항선박교육·의료관리자교육·고속선교육·선박조리사교육</u>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별 <u>교육대상자·교육내용</u> 및 <u>교육기간</u>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② <u>제1항에 따른</u> ----- --- <u>교육대상자·교육내용, 교육기간</u> 및 ----- -----.
<신 설>	③ 선원이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완료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u>교육과정별 교육기간</u> 을 법 제51조에 따른 승무경력에 포함해야 한다.
④ 선원(외국인 선원을 포함한	④ -----

다)이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에서 정하는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그 교육과정은 <u>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과 동등이상의 수준</u> 이라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u>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u> 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 ----- ----- ----- <u>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과 같은 수준 이상</u> ----- ----- ----- <u>제1항에 따른</u> ----- -----.
제44조(선원의 교육훈련 위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7조 제1항에 따라 선원의 교육훈련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44조(선원의 교육훈련 위탁) ① ----- ----- ----- ----- ----- <u>체결해야</u>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체결사실을 관보에 <u>고시</u> 하여야 한다.	② ----- ----- ----- <u>고시</u> 해야 ----- -----.
제44조의2(선원의 교육훈련 위탁에 대한 감독) ① (생략)	제44조의2(선원의 교육훈련 위탁에 대한 감독) ① (현행과 같음)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자료제출 결과 위탁한 업무에 관하여 개선이 <u>필요하다고 인정되면</u>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 ----- ----- <u>필요한 경우에는</u> ----- -----.
제45조(선원교육훈련경비의 부담)	제45조(선원교육훈련경비의 부담)

선박소유자 또는 교육훈련을 받는 자(이하 “피교육자”라 한다)는 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한다.	----- -- 사람(이하 “피교육자”라 한다)은 ----- ----- -----.
1. 피교육자가 선박소유자에게 고용되어 있는 <u>경우</u> : 선박소유자	1. ----- ----- <u>경우</u> : ----- --
2. 피교육자가 선박소유자에게 고용되어 있지 <u>아니한 경우</u> : 피교육자	2. ----- ----- <u>않은 경우</u> : ----- -----
제47조(정부보조의 범위) 법 제118조제1항에 따라 정부의 보조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를 행한다.	제47조(정부보조의 범위) 정부는 법 제118조제1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49조(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법 제129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는 선원은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이 법·「근로기준법」이나 법에 <u>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위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나 기타 자료를 제출하여야</u> 한다.	제49조(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 ----- ----- ----- --- <u>따른</u> ----- ----- <u>그 밖의 자료를 제출해야</u> --.
제49조의3(외국에서의 행정관청의 업무) ① (생략)	제49조의3(외국에서의 행정관청의 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영사는 제1항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무 수행 사	② ----- ----- ----- -----

실을 <u>통보하여야</u> 한다.	--- <u>통보해야</u> -----.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 결과를 영사에게 <u>통보하여야</u> 한다.	③ ----- ----- -----. ----- ----- ----- <u>통보해야</u> ----.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제49조의5(외국선박에 대한 조치) ① 법 제133조제3항에서 “ <u>기국</u> 에 통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제49조의5(외국선박에 대한 조치) ① ----- “ <u>기국</u> (旗國)----- ----- -----.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선장에게 문서로 통보 가. (생략) 나. 상세점검 결과 선원의 근로기준 및 생활기준과 관련하여 시정이 필요한 사항 및 시정조치를 <u>하여야</u> 하는 기한	1. ----- ----- 가. (현행과 같음) 나. ----- ----- ----- ----- <u>해야</u> ----- -----
2. (생략)	2. (현행과 같음)
3. 다음 각 목의 외국정부 등에 해당 외국선박의 「2006 해사노동협약」 위반사실 등을 통보(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정하	3. ----- ----- ----- ----- -----

다)	--
가. 해당 외국선박의 <u>기국(旗國)</u> 정부 또는 대한민국 주재 기국 영사	가. ----- <u>기국</u> -----
나. (생략)	나. (현행과 같음)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선박에 대한 상세점검 결과를 기록한 상세점검보고서를 <u>작성·관리</u> 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상세점검보고서의 사본에 해당 외국선박의 기국 정부가 보낸 모든 문서를 첨부하여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 ----- <u>작성·관리</u> ----- ----- <u>리해야</u>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33조제4항에 따른 출항정지 명령 또는 출항정지 조치의 원인이 된 사항이 시정되었거나 신속하게 시정될 것으로 <u>인정되는 경우</u> 지체 없이 해당 외국선박의 출항정지 명령 또는 출항정지 조치의 <u>해제 여부를 결정</u> 하여야 한다.	③ ----- ----- <u>판단되는 경우</u> ----- ----- <u>에는</u> ----- ----- <u>해제를 결정</u> 해야 -----
④·⑤ (생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49조의6(외국선박의 선원 불만처리) ① (생략)	제49조의6(외국선박의 선원 불만처리) ① (현행과 같음)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34조에 따른 신고를 한 선원 등의	② -----

신원이 알려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u>하여야</u> 한다.	----- ----- <u>해야</u> -----.
제50조의3(해사노동적합증서 등의 유효기간) ① (생략)	제50조의3(해사노동적합증서 등의 유효기간)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해사노동적합증서 및 임시해사노동적합증서의 유효기간의 <u>기산</u> 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② ----- ----- <u>기산(起算)</u>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제50조의6(사업계획의 승인) ① 센터는 법 제147조제2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u>당해연도</u> 개시 <u>30일 전</u> 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0조의6(사업계획의 승인) ① ----- ----- <u>해당연도</u> --- <u>30일 전</u> ----- -----.
② 센터는 제1항의 규정에 <u>의하여</u>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 또는 예산서를 <u>변경하고자</u>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할 내용 및 사유를 <u>기재한</u> 사업계획서 또는 예산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미리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 <u>따른</u> ----- ----- <u>변경하려는</u> ----- ----- <u>기록한</u>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는 사업목표, 시행방침 및 <u>사업별 소요예산</u> 을 구분하여 <u>기재</u> 하여야 한다.	③ <u>제1항에 따른</u> ----- ----- <u>사업별로 필요한 예산</u> 을 구분하여 <u>기록</u> 해야 ----- -----.

제50조의7(서류의 선박 내 게시 등) ① 법 제1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소유자”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선박소유자를 말한다.

1. 법 제151조제1항제1호·제3호·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제2호의 서류: 모든 선박의 선박소유자
 2. 법 제151조제1항제2호의 서류: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의 선박소유자
 3. 법 제151조제2항제3호의 서류: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어선법」에 따른 어선은 제외한다)의 선박소유자
- ② 제1항에 따른 선박소유자는 법 제151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한글과 영문으로 작성하여 선원이 이용하는 선박 내 사무실, 식당 또는 휴게실 중 한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선박의 선박소유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서류는 게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0조의7(서류의 선박 내 게시 등) ① -----

-----.

1. -----

-- 소유자
 2. -----

-- 소유자
 3. -----

----- 소유자
- ② -----

-- 게시해야 -----.
----- 않는 선박의 소유자-----
----- 않을 -----.

제51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적용) 법 제15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해군함정·경찰용선박 기타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선박을 말한다.

- 제52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①
· ② (생략)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58조제1항에 따라 법 제108조제1호·제2호·제4호에 따른 업무를 센터에 위탁한다.
④ (생략)

제52조의2(안전운항을 위한 선박소유자의 의무)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의 적용을 받는 선박소유자는 법 제6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선박운항의 안전을 위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선원에게 선박안에서의 임무 및 선박의 특성을 숙지하도록 교육을 실시할 것
2. 선장에게 선박안에서 필요한 근무지침서를 제공할 것
3. 선장에게 해상인명안전 및 해양환경보호와 관련된 국내

제51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적용) -----
----- 해군함정·경찰용선박 및 그 밖에 -----
-----.

- 제52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법 제108조제1항제1호-----
-----.
④ (현행과 같음)

제52조의2(안전운항을 위한 선박소유자의 의무) -----

이행해야 -----.

1. ----- 선박 안-----
----- 자세히 알도록 -----
2. ----- 선박 안-----

3. -----
----- 국내-----

